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내부규정

본 내규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제1장 조 직

제1조 건축학교육 인증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업무: 건축학 전공 업무중 인증에 관련한 사항을 다루며 실질적으로 교수회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인증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과 시설의 확충, 교육과정 개서, 학생지도, 인증준비예산의 집행 등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과 시안을 만드는 업무를 행한다.
- ② 위원장의 선임: 학부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건축학교육인증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한다.
- ③ 소위원회 구성: 인증준비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지명을 통해 1인의 간사와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교외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 ④ 인증준비위원회의 주요결정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제2장 교육편성 및 개설

제1조 건축학과 전공과목의 목록 및 이수학점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과과정표[표1]와 같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제2조 교양 및 전공기초 교과목은 총 33학점(일반교양 24학점 + 전공기초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해당 입학연도의 기준을 따르며, 33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교양 필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교양을 이수해야 함을 권장한다.

제3조 ① 매학기 교과목 개설은 교과과정표[표1]에서 요구하는 각 학기별, 학년별 교과목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당 교수의 사정에 의해 강좌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담당 교수가 적격의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황에 따라 개설학기 기준을 따를 수 없을 경우 건축학전공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스튜디오별 건축설계강좌는 주당 한 학생에 대한 지도시간이 40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이수기준

제1조 수강신청은 전공필수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의하며, 학년제한 없이 모든 전공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강좌별 수강 최대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2조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표1]의 전공 및 해당학년에서 요구되는 교양교과의 영역별 최소이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졸업을 위한 최소학점은 교양 및 전공기초 33학점, 전공필수 105학점, 전공선택 및 기타 22학점으로 총 160학점이다.

제3조 건축설계 교과목의 경우 건축설계(1)부터 건축설계(8)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수강하여야하며, 선수과정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설계 스튜디오 교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 스튜디오 교과목은 중복 및 역수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의 상담을 통해 승인을 득한 수 수강이 가능하다.

제4조 휴학 및 불일치복학 등의 사유로 설계과목을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 계절학기 설계교과를 수강하여 이수 못한 설계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단, 대체수강 대상 설계과목은 기수강한 설계과목의 수준 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또한, 불일치복학을 사유로 한 대체이수 인정은 1회에 한한다.

제4장 전공변경, 전과 및 편입학 교과 이수기준

제1조 전공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2조 전공변경 신청은 제 4학기(2학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학부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전공변경이 허용된 자의 소속변경은 당해학기 복학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 전공변경 총 허용인원은 입학정원의 5% 이내로 한다.

제5조 전공변경 신청은 학생이 소정의 양식과 함께 상담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축학부 행정실을 통해 신청하며, 심사는 건축학부 교수회의에서 한다.

제6조 전과한 자는 건축학전공의 졸업요건에 맞게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과 및 편입한 자의 교과목 인정기준은 건축학 교과목 인정서[표2],[표3]에 의해 사정위원회(전임교원 2명이상)에서 정한 결정에 따른다. 사정위원회는 전과 및 편입한 학생의 전과 및 편입 전 이수과목이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의 내용에 상응할 때 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제7조 전과 및 편입학생은 2학년과정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교과 수강은 건축설계(1)부터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전적대학에서 건축제도와 건축기초설계에 상응한 기초설계교과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편입 1학기에 건축제도를 수강하며, 2학기에 건축기초설계를 수강한다.

제8조 편입학 및 전과심사방법은 이전학기까지의 성적과 건축학전공주임교수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과 및 편입학 희망자가 규정 정원보다 많을 경우 건축학부 교수회의에서 면접,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제9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복수전공,부전공을 불허한다.

제5장 강의 및 수업계획서

제1조 모든 강좌의 담당 교강사는 수강신청 개시전에 강의계획서를 작성, 학부 행정실 인증담당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의계획서는 인증위원회에서 배부된 양식을 따른다.

제2조 동일 교과목이나 분반 등에 의해 교강사가 다른 강좌인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간의 협의 하에 수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제3조 동일 주제로서 강의수준이 달라지는 단계별 교과(예: 건축설계1,2,3,4,..)는 담당 교강사 전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강좌별로 수업내용과 수준을 조정하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4조 특히 설계교육의 내용은 건축학부 설계교과 교육과정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하며 강좌별 교육내용 및 수준을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한다.

제6장 인증을 위한 자료구축

제1조 모든 강좌의 담당 교강사는 성적처리 후 1주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출석부, 성적표, 강의내용, 과제 및 시험문제지, 답안지 과제물, 학생발표자료, 최종성과물 등 모든 자료를 인증용 자료실에 제출하여야한다. 학년별, 영역별 교과담당 책임교수는 자료 수집의 책임을 진다.

제7장 지도교수제의 운용

제1조 1학년 입학시 학년기준으로 전체 전임교수에게 균등 배정하되, 특별한 사유에 따라 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건축학전공주임교수의 면담에 의해 지도교수를 변경 배정할 수 있다.

제2조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학업, 취업, 진학 상담 등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자료는 대학본부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8장 경과규정

제1조 '03 ~ '09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이 '10년도에 수정된 교육과정으로 졸업하고자 할 경우, 수정된 교육과정의 전공필수 영역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된 교과과정으로 인해 변경전 유사 교과목으로서 학점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교과목 인정서[표3]를 통해 인증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제2조 '03 ~ '09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이 '10년도에 수정된 교육과정으로 졸업하고자 할 경우, 수정 교육과정의 전공필수, 선택 영역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며, 전공학점 인정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는다.